

## 경운대학교 갈등조정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구성원 집단간, 부서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갈등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우리대학 구성원 집단을 대표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교직원으로부터 갈등조정청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·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갈등조정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기능)** ①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 사항 조정

② 부서간의 갈등 사항 조정

③ 기타 조직 내 갈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

**제6조 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